

예보용어

□ 관련 근거

- 예보업무규정 제5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① 예보국장은 예보업무 수행 과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예보용어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적용 범위

- 예보용어는 날씨해설, 기상정보, 예보통보문 등 예보를 전달하는 문서와 영상에 사용되는 언어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의한다.
 - ① 사전적 의미 외에 그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빈도 표현 및 시간범주)
 - ② 예보구역 및 특보구역으로써 별도정의된 지역이 있는 경우(예: 장소표현)
 - ③ 강도 등 강조가 필요한 경우(예: 바람 강도표현 등)
 - ④ 기타 적용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 적용 제외범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보용어로서 별도 정의하지 않는다.
 - ① 기상법 및 예보업무규정에서 기 정의된 용어
 - ② 기상청 내 타 규정에서 기 정의된 용어
 - ③ 사전적 의미 자체로 소통이 가능한 언어(예: 섬 지역 등)
 - ④ 양(또는 크기)을 나타내는 숫자로서 소통이 가능한 언어(예: 2m/s의 바람, 2cm 미만의 눈)

1 하늘상태 표현

표현 용어	구름양(운량)	비 고
맑음	구름이 0~5할의 상태	-
구름많음	구름이 6~8할의 상태	
흐림	구름이 9~10할의 상태	

2 바람(풍속) 표현

표현 용어	바람 강도	비 고
약한 바람	바람의 세기가 4m/s 미만	-
약간 강한 바람	바람의 세기가 4~9m/s 미만	-
강한 바람	바람의 세기가 9~14m/s 미만	* 강풍특보 기준 - 주의보: 14m/s 이상 또는 순간 20m/s 이상 - 경 보: 21m/s 이상 또는 순간 26m/s 이상
매우 강한 바람	바람의 세기가 특보 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이상일 경우	

3 파고 표현

표현 용어	파고	비 고
높은 물결	물결의 높이가 2~3m 미만	* 풍랑특보 기준 - 주의보: 유의파고 3m 이상 - 경 보: 유의파고 5m 이상
매우 높은 물결	물결의 높이가 특보 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이상일 경우	

4 강수 표현

▶ 강수량 및 적설

- 단기통보문과 날씨해설·기상정보에 예상강수량(적설)을 직접 표현
- 단기예보 3시간 단위 표출 시 정성정보로 활용
- 육안으로 확인되나 강수량(적설)을 기록하기 어려운 정도를 빗방울(눈 날림)로 표현

표현용어	약한 비	(보통) 비	강한 비	매우 강한 비
시간당 강수량	3mm 미만	3~15mm 미만	15~30mm 미만	30mm 이상

표현용어	(보통) 눈	많은 눈
시간당 적설	1cm 미만	1cm 이상

표현용어	빗방울	눈 날림
강수량/적설	0.1mm 미만	0.1cm 미만

- ※ 바람 및 파고 표현은 원칙적으로 정량적인 값으로 표기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요하는 단계 이상에서 정성적인 표현으로 강조하여 표현함.
- ※ 단, 눈·비의 경우에는 약한 눈·비라도 사용자의 주의를 요하므로, 강수 표현의 모든 단계에 정성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함.

5 시간범주 표

▶ 시제표현

- (표현 방법)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여 정량적으로 표현
- (적용 범위) 강수 현상(필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기상 현상(선택)

시간	00	03	06	09	12	15	18	21	24
시간 범주 및 표현	2 등분	오전(00~12시)				오후(12~24시)			
	4 등분	새벽 (00~06시)		오전 (06~12시)		오후 (12~18시)		밤 (18~24시)	
	8 등분	이른 새벽 /새벽 (00~03시)	늦은 새벽 /새벽 (03~06시)	아침 (06~09시)	오전 (09~12시)	낮 (12~15시)	늦은 오후/ 오후 늦게 (15~18시)	저녁 (18~21시)	늦은 밤 /밤늦게 /밤 (21~24시)

▶ 시제 간 경계를 표현할 때에는 '무렵'을 사용하여 표현

(예) 자정 무렵 - 자정을 기준으로 1시간 전후 시간(2시간 정도)

6 빈도 표현

표현 용어	설 명	비 고
한때	예보대상 구간 내에서 연속하여 일시적(전체 중 50% 이하)으로 한번 나타남	-
가끔	예보대상 구간 내에서 띄엄띄엄 여러 번(전체 중 50% 이하) 나타남	-

7 기온예보 표현

표현 용어	설 명	비 고
아침최저기온	03:01 에서 09:00 사이의 가장 낮은 기온 값	-
낮최고기온	09:01 에서 18:00 사이의 가장 높은 기온 값	-
밤최저기온	18:01 에서 다음날 09:00 사이의 가장 낮은 기온 값	-

8 장소 표현

▶ 광역단위별 방위에 따른 분류(붙임 1)

1)대분류	2)중분류	3)소분류	4)방위포함 상세	5)해당 시·군·구	관할관서	6)조합 사용
중부 지방	수도권	서울	서북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수도권 기상청	경기북부(북서+북동) 경기서부(북서+남서) 경기동부(북동+남동) 경기남부(남서+남동) 경기권북서부(경기북서+인천) 경기권서부(경기서부+인천)
			서남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동북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동남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인천 경기 (경기권)	인천	인천, 인천(옹진), 인천(강화)		
			경기북서부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의정부		
			경기북동부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남양주, 구리		
			경기남서부	수원, 성남, 용인,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시흥, 군포, 의왕, 안산, 오산, 화성, 평택, 안성		
			경기남동부	하남, 광주, 이천, 양평, 여주		
			-	-		
	강원도	-	강원영서북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강원지방 기상청	강원영서(영서북·중·남부) 강원영동(영동북·중·남부) 강원북부(영서북부+영동북부) 강원중부(영서중부+영동중부) 강원남부(영서남부+영동남부)
			강원영서중부	춘천, 홍천, 평창(진부면, 대관령면)		
			강원영서남부	원주, 횡성, 영월, 평창(평지, 정선)		
			강원영동북부	고성, 속초, 양양		
강원영동중부			강릉			
강원영동남부			태백, 동해, 삼척			

충청권	충북 (충북권)	충북북부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청주 기상지청	충청권북부(충북북부+충남권북부) 충청권남부(충북남부+충남권남부) 충남권남부(대전+충남남서부 +충남남동부) 충남권북부(세종+충남북서부 +충남북동부) 충남서부(충남북서부+충남남서부) 충남권동부(대전+세종+ 충남북동부+충남남동부) 충북중·북부(중부+북부) 충북중·남부(중부+남부)		
		충북중부	청주, 증평, 진천, 괴산				
		충북남부	보은, 옥천, 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남권)	대전	-	대전지방 기상청			
		세종	-				
		충남북서부	서산, 당진, 예산, 홍성, 태안				
		충남북동부	천안, 아산				
		충남남서부	보령, 서천, 청양, 부여				
		충남남동부	공주, 계룡, 논산, 금산				
	남부지방	전북 (전북권)	전북북서부	전주, 익산, 완주, 군산, 김제		전주 기상지청	전라권서부(광주+전북북서+ 전북남서+전남북서+전남남서) 전라동부(전북북동+전북남동 +전남북동+전남남동) 전북북부(북서부+북동부) 전북남부(남서부+남동부) 전남권북부(광주+전남북서+전남북동) 전남남부(전남남서+전남남동) 전남권북서부(광주+전남북서) 전남권서부(광주+전남북서+ 전남남서)
			전북북동부	무주, 진안, 장수			
			전남북서부	정읍, 고창, 부안			
			전남북동부	남원, 임실, 순창			
		전라권	광주	-		광주지방 기상청	
전남북서부			장성, 나주, 함평, 영광, 담양				
전남북동부			곡성, 구례, 화순				
전남남서부			목포, 영암, 무안, 신안(흑산면 제외), 흑산도·홍도, 해남, 진도, 강진, 장흥, 완도				
전남남동부			여수(삼산면 제외), 광양, 고흥, 보성, 거문도·초도, 순천				
대구·경북 (경북권)			대구	대구(군위 제외), 대구(군위)	대구지방 기상청		
경북북동부		영주, 영양, 봉화, 영덕, 울진					
경북중부		안동, 의성, 청송					
경북북서부		상주, 문경, 예천					
경북남서부		칠곡, 김천, 구미, 고령, 성주					
경북남동부	영천,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경상권	-	-	울릉도·독도	부산지방 기상청			
	부산	부산동부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부산중부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부산서부	강서구, 사하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울산	울산동부	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산서부	울주군				
	경남	경남중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창원				
		경남동부	양산, 김해				
		경남북서부	함양, 거창, 합천				
		경남남서부	진주, 하동, 산청,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별도	제주도	-	제주시 중 구좌읍, 우도면, 서귀포시 중 성산읍, 표선면	제주지방 기상청	-		
		-	제주시 중 한림읍, 한경면, 서귀포시 중 대정읍		-		
		-	서귀포시(대정읍, 성산읍, 표선면 제외)		-		
		-	제주시(구좌읍, 한림읍, 우도면, 한경면, 추자면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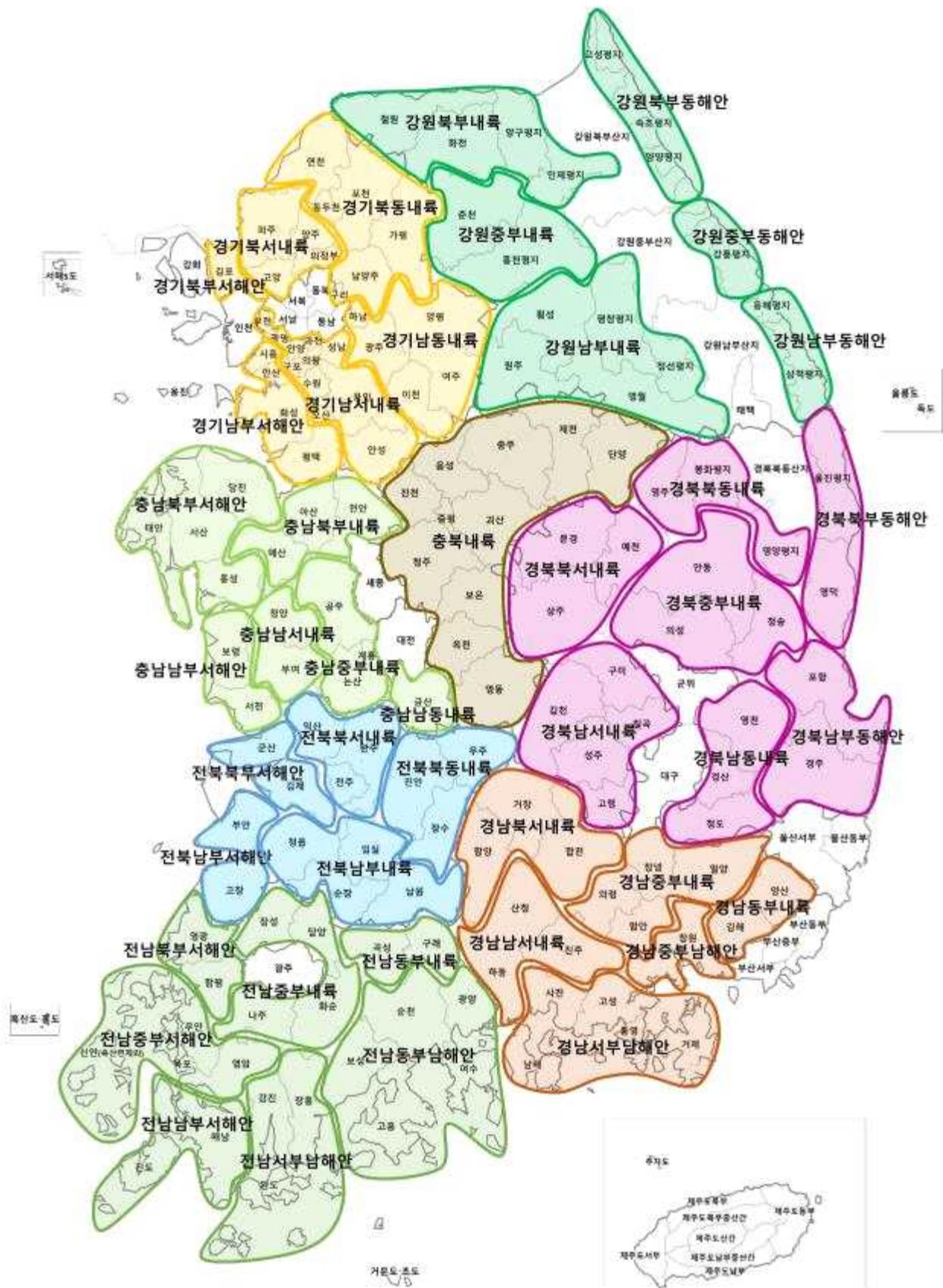
☐ 지형특성에 따른 분류(붙임 2)

표현 용어	설 명	비 고
산지(또는 산간)	해발고도 600m 이상 또는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역 (산간과 산악, 고산의 의미를 포함)	-
중산간	해발고도 200~600m의 고지대	제주지역 限
해안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행정구역)	-
내륙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해안을 제외한 육지 행정구역) ※ 바다에 접해있으나 바다의 영향을 적게 받는 행정구역 포함	-
일부	해당 예보 구역 전체의 50% 미만	-
대부분	해당 예보 구역 전체에 거의 가까운 정도	-

구분	1)대분류	2)중분류	3)소분류	4)방위포함 상세	5)해당 시·군	6)조합 사용
해안	서해안	중부서해안	수도권서해안	인천	인천, 인천(강화)	-
				경기북부(서)해안	김포	-
			경기남부(서)해안	시흥, 안산, 화성, 평택	-	
			충남(서)해안	충남북부(서)해안	서산, 당진, 홍성, 태안	-
				충남남부(서)해안	보령, 서천	-
			전라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북북부(서)해안	군산, 김제
		전북남부(서)해안			고창, 부안	-
		전남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	영광, 함평	전남해안 (전남서해안+전남남해안)
				전남중부서해안	목포, 영암, 무안, 신안(흑산면 제외)	
				전남남부서해안	진도, 해남	
				전남남해안	여수(삼산면 제외), 광양, 고흥, 보성, 순천	
		남해안	-	전남남해안	전남동부남해안	여수(삼산면 제외), 광양, 고흥, 보성, 순천
	전남서부남해안				장흥, 강진, 완도	
	경남(권)남해안			부산	부산	
			경남중부남해안	창원		
			경남서부남해안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동해안		경상동해안	경남(권)동해안	울산	울산
		경북동해안		경북북부(동)해안	영덕, 울진, 평지	
경북남부(동)해안				포항, 경주		
강원동해안		-	강원북부(동)해안	고성, 평지, 속초, 평지, 양양, 평지	-	
			강원중부(동)해안	강릉, 평지	-	
			강원남부(동)해안	동해, 평지, 삼척, 평지	-	

구분	1)대분류	2)중분류	3)소분류	4)방위포함 상세	5)해당 시·군	6)조합 사용
	제주도해안	-	-	제주도동부해안	제주시 중 구좌읍,우도면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외), 서귀포시 중 성산읍,표선면 (제주도남부중산간 제외)	-
				제주도서부해안	제주시 중 한림읍,한경면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외), 서귀포시 중 대정읍	
				제주도남부해안	서귀포시(대정읍, 성산읍, 표선면, 제주도남부중산간, 제주도산지 제외)	
				제주도북부해안	제주시(구좌읍, 한림읍, 우도면, 한경면, 추자면,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도산지 제외)	
내륙	-	중부내륙	수도권내륙	서울	서울	경기북부내륙(북서+북동) 경기서부내륙(북서+남서) 경기동부내륙(북동+남동) 경기남부내륙(남서+남동) ※ 서울 포함시 수도권 사용 가능
				경기북서내륙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경기북동내륙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남양주, 구리	
				경기남서내륙	수원, 성남, 용인, 부천, 광명,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오산, 안성	
				경기남동내륙	하남,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강원내륙	강원북부내륙	철원, 화천, 양구평지, 인제평지	-
				강원중부내륙	춘천, 홍천평지	-
				강원남부내륙	원주, 횡성, 영월, 평창평지, 정선평지	-
			충북내륙	충북 전역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청주, 증평, 진천, 괴산, 보은, 옥천, 영동	※ 전체 구조 균형상 '충북내륙'이 정의되었으나, 충북 전역이 '내륙'이므로, 예비용어상 '방위에따른 분류' 사용 권고
			충남내륙	대전, 세종	대전, 세종	충남남부내륙(중부+남동+ 남서)
		충남북부내륙		천안, 아산, 예산	충청권내륙(충북내륙+충남권내륙)	
		충남중부내륙		공주, 계룡, 논산	충남권중부내륙(충남중부내륙 +대전+세종)	
		충남남동내륙		금산	충청남부내륙(충북남부+ 충남남부내륙)	
		충남남서내륙		부여, 청양	충청권남부내륙(충북남부+ 충남남부내륙+대전)	
		남부내륙	전북내륙	전북북서내륙	전주, 익산, 완주	전북북부내륙(북동+북서) 전북서부내륙(북서+정읍) 전라권내륙(전북내륙+전남권내륙)
				전북북동내륙	진안, 무주, 장수	
				전북남부내륙	남원, 임실, 순창, 정읍	
			전남내륙	광주	광주(전남권중부내륙)	
				전남중부내륙	담양, 장성, 나주, 화순	
				전남동부내륙	곡성, 구례	

구분	1)대분류	2)중분류	3)소분류	4)방위포함 상세	5)해당 시·군	6)조합 사용
			경북내륙	대구	대구(군위 제외), 대구(군위)	경북북부내륙(북서+북동) 경북중부내륙(북서+북동+중부) 경북남부내륙(남서+남동) 경북서부내륙(북서+남서) 경북동부내륙(북동+남동) 경남서부내륙(남서+북서) 경상권내륙(경북내륙+경남내륙)
				경북북서내륙	상주, 문경, 예천	
				경북북동내륙	봉화평지, 영양평지, 영주	
				경북중부내륙	안동, 의성, 청송	
				경북남서내륙	김천, 구미, 칠곡, 고령, 성주	
				경북남동내륙	영천, 경산, 청도	
			경남내륙	경남동부내륙	김해, 양산	
				경남중부내륙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경남남서내륙	진주, 하동, 산청	
				경남북서내륙	함양, 거창, 합천	
산지	-	-	강원산지	강원북부산지	속초산지, 인제산지, 고성산지, 양양산지, 양구산지	-
				강원중부산지	강릉산지, 평창산지, 홍천산지	-
				강원남부산지	동해산지, 삼척산지, 정선산지	-
				태백	태백	-
			경북산지	경북북동산지	영양산지, 봉화산지, 울진산지	-
제주도산지	-	-	-	제주특별자치도 중 해발고도 600m 이상	-	
중산간	제주도 중산간	-	-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시(추자면, 우도면 제외) 중 해발고도 200~600m미만	-
				제주도남부중산간	서귀포시 중 해발고도 200~600m미만	-
섬	-	-	-	-	서해5도, 인천(옹진), 울릉도·독도, 추자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
별도	지리산부근	-	-	-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



□ 순화 및 병행 표기

연번	개선 전	순화
1	강구역	강수 구역
2	거스트(GUST)	돌풍
3	날씨 개황	날씨 요약
4	동진	동쪽으로 이동
5	박무	얇은 안개*
6	발원	발생
7	에코	레이더 강수대
8	연무	먼지 안개(연무)
9	일사	햇볕(일사*), 햇볕*
10	풍상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11	풍하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
12	해기차	해수면 온도와 기온 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차
13	해무	바다 안개

□ 서술형

연번	개선 전	서술 예시
1	기상조	기압 변동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습니다.
2	복사 안개	지표면 냉각에 의해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3	소강	① 현재 강하게 내리는 비는 오후에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②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입니다. / 누그러질 것입니다.
4	안개 소산	안개가 점차 열어질 것입니다. ※ 소산: 흩어지다, 열어지다, 사라지다
5	천문조	달의 인력이 강해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해설

연번	용어	해설
1	가시거리*	대기의 혼탁 정도를 나타내는 기상요소로서 지표면에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목표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
2	기상조	기상에 의한 바닷물 높이의 변동
3	기압마루*	대기 중의 같은 고도면에서 주위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
4	대류성 강수*	적란운 내부의 상승기류가 활발한 곳에서 주로 수직의 병합 또는 결착에 의해 성장한 후 상승기류가 생긴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내리는 강수
5	목측	계기로 관측하지 않고 관측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관측하는 것
6	발효	발표한 특보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각
7	신적설	지면 위나 설면 위에 새로 쌓인 눈
8	실효 습도*	화재 예방의 목적으로 수일 전부터의 상대습도에 경과 시간에 따른 가중치를 주어서 산출한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수, 50% 이하가 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음
9	열대 저압부*	중심 최대풍속이 17m/s 미만의 열대성 저기압
10	온난이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
11	유의파고	특정 시간 주기 내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의 높이 중 가장 높은 파고부터 1/3에 해당하는 파고의 높이들의 평균 높이
12	천문조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으로 일어나는 조석을 말함(=천체조(天體潮))
13	최심적설	실제 지표면에 쌓인 눈의 최대 깊이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확정 용어(기상청 소관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확정('21.1.21., 대변인실))